

## 운동하러 노원가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도시과에서 '운동하러 노원가게'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12월 21일

노원구청장



### 1. 채용인원 : 총 2명

구분	분야	채용인원	주요업무내용
기간제 (운전원 및 현장관리)	'운동하러 노원가게' 운전원 및 현장관리	2	- 차량운행 및 차량관리 - 운동용품 대여·반납 및 대장 작성 - 운동용품 소독 및 관리 - 운동용품 사용 안내 및 안전관리

※ 근로기간 및 시간, 급여는 예산규모, 사업계획의 변경 등 행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2024년 생활임금 반영

### 2. 채용방법

#### 가. 1차 서류심사

-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
-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

#### 나. 2차 면접심사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채용
- 평가항목에 각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후 고득점 순으로 면접합격자 선정(2배수)

#### 다. 공개추첨

- 면접심사 이후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공개추첨 시행(무작위 추첨)

※ 동점자 처리기준 : 「국가유공자법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
※ 예비합격자 선발 : 2명 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)

### 3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
#### ○ 자격

- 채용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
-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로서 근무 투입 후 즉시 1톤 트럭 운전 가능자

- 최근 1년 이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우대
  - 자동차 대형면허소지자
  - 안전관리 근무 경력자

#### 4. 채용일정 및 원서접수

- 공고기간 : 2023. 12. 21.(목) ~ 12. 28.(목)
- 접수기간 : 2023. 12. 26.(화) 09:00 ~ 12. 28.(목) 18:00
- 접수처 : 노원구청 6층 체육도시과(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)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- ※ 근무시간(09:00~18:00, 중식시간(12~13시) 제외)에 한하며, 우편·팩스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
- 공고방법 : 노원구청 홈페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. 1. 4.(목) 개별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
- ※ 결격사유(지방공무원법 제31조)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 취소

#### 5. 전형일정

시험구분	심사일시	심사장소	합격자 발표	발표방법
1차시험 (서류전형)	2023.12.29.(금)	노원구청 체육도시과	2023.12.29.(금)	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
2차시험 (면접시험)	2024.1.3.(수) 10:00	노원구청 5층 소회의실	2024.1.3.(수)	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
추첨	2024.1.4.(목) 10:00	노원구청 5층 기획상황실	2024.1.4.(목)	홈페이지 게시

※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#### 6.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 1부
- 나.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- 다. 자동차 운전면허증 1부.
- 라. 최근 1년 이내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명서 1부.
- 마. 자동차 운전면허증(대형) 1부.(해당자에 한함)
- 바. 안전관리 근무 경력증명서 1부. (해당자에 한함)
- 사. 「국가유공자법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※ 응시원서, 이력서 등 양식은 노원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nowon.kr/>)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

## 7.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

가. 근무기간 : 2024.1.10. ~ 6.30.

나. 근무시간

○ 1~2월(주 35시간) : 월요일 - 금요일 09:00~17:00  
(휴게시간 12:00~13:00제외)

○ 3~6월(주 36시간) : 화요일 - 금요일 08:30~17:30, 토요일 12:30~17:30  
(평일 휴게시간 12:00~13:00제외, 토요일 휴게시간  
근무 중 1시간씩 교대)

다. 근무장소 : 1~2월 실내기관(어린이집·유치원·경로당 등) 및 3~6월 관내 공원

라. 급 여 : 주35시간 월2,092,780원, 주36시간 월 2,149,960원  
(4대 보험료 포함, 세전)

마. 기타사항 : 근로계약서, 서울시 지침 및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

※ 2024년 노원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며,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등 변동 가능성 있음

※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별도

※ 관내 공원 근무 시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미근무 할 수 있음

## 8. 유의사항

가.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또한,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나.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결격사유(지방공무원법 제31조)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다.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확정일로부터 6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라.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이메일([green11@nowon.go.kr](mailto:green11@nowon.go.kr)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

바랍니다.

- 마.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(2024년 3월 4일)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이 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[개인정보보호법]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바.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면접일 3일 전까지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사.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아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자.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체육도시과(☎ 02-2116-08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※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제31조(결격사유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